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1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 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법제 2 조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환경부장관이 고시 한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이하 PCBs 라 한다.)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증명서	
			1.알드린 2.엔드린 3.디엘드린 4.톡사펜 5.클로르데인 6.헵타클로르 7.미렉스 8.헥사클로로벤젠 9.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0.디디티 11.다이옥신 12.푸란 등 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0. 2.] [환경부고시 제 2024-186 호, 2024. 10. 2, 전부개정] [별표 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뒷장 첨부 참조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뒷장 첨부 참조				
	배출시설	법제 2 조 규칙제 2 조[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가.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이 4.5㎥ 이상인 반사로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도가니로				
3.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시설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 시멘트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소성시설				
7.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8. 소각시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을 포함한다)						
제조·수출입·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법 13 조①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없음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2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조·수출입·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법 13 조② 영 18 조	②①항의 단서에서,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수출입 및 사용하는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 기준 준수	해당 없음			
			영 제 18 조(관리기준) ① 법 제 13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법 제 13 조제 3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 1 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6. 7.>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수계(水界)·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 13 조제 3 항제 4 호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 3. 27.>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17. 3. 2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 18 조제 4 항 관련) <개정 2019. 7. 2.> 1.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3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조·수출입·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법 13 조② 영 18 조	2. 보관·저장·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잔류성오염물질 보관·저장·전열 시설 ① 잔류성오염물질명 ② 보관·저장·전열 수량 ③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한 해당 물질의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 용도 ④ 취급 시 주의사항 ⑤ 관리자 나. 크기: a=40cm , b=60cm 이상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법 13 조③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법 13 조④ 영 18 조	④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 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이는 상기 ②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법 13 조⑤⑥ 영 18 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16. 1. 27.]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4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배출규제	배출허용 기준	법 14 조 규칙 7 조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 1 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 15 조제 2 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 33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 17.>		해당 없음		
	배출시설 설치기준	법 15 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경비 1. 대기배출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설치 관련 인.허가		해당 없음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기준	법 22 조 규칙 18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준수		규칙 18 조[별표 8] 처리기준 준수		환경운영관리 관리 절차
		규칙 18 조[별표 8]	1. PCBs로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4 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 2. PCBs로서 지정폐기물인 PCBs(2mg/L 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 수집운반: 규칙[별표 3] 3.가. 수집운반 기준 준수 나. 보관: 규칙[별표 3] 3.나. 보관기준 준수 1) 보관기준: 본문 참조 2) 보관창고/보관용기 기준		40cm 60cm 10cm이상 15cm이상		

다. 처분: 규칙[별표 3] 3.다. 처분기준 준수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5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	법 24 조의 2 영 23 조 규칙 21 조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대상기기 등" 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 실시 [영 23 조 : 관리대상기기] : [전기절연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유입식(油入式) 기기] 다만, 2008 년 1 월 27 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05 mg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7.31> 1. 변압기 2. 콘덴서 3. 계기용변압변류기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개정 2023. 6. 7.> [규칙 21③ : 변경신고 기준] 1.절연유(PCBs 를 리터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 교체 2.관리대상기기 등의 매매 및 폐기 3.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실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실시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증명서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법 25 조 영 22 조 규칙 22 조 [별표 11]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영제 22 조] : 오염기기 등 오염기기 등이란 PCBs 가 50mg/L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변전설비)을 말한다 규칙 22 조 [별표 11]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1. 오염기기 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2. 오염기기 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	해당 없음. PCBs 함유량이 50mg/L 미만 임.		해당 없음	
	1.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2.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6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별표 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가. 물질목록

고유번호	부속서 등재정보	화학물질 명칭	특정면제 사항
2004-1	A	알드린(Aldrin)	-
2004-2	A	엔드린(Endrin)	-
2004-3	A	디엘드린(Dieldrin)	-
		이하 생략: 해당 법규 [별표 1] 참조	

나. 구체적 물질목록 및 화학물질식별번호

고유번호	부속서 등재정보	화학물질 명칭	화학물질식별번호 (CAS No)
2004-1	A	알드린(Aldrin)	309-00-2
2004-2	A	엔드린(Endrin)	72-20-8
2004-3	A	디엘드린(Dieldrin)	60-57-1
		이하 생략: 해당 법규 [별표 1] 참조	

비고 1. 고유번호 : 스톡홀름협약 등재연도-연번

2. 부속서 등재정보 : A(금지물질), B(제한물질), C(비의도적 생산 물질)로 부속서 A~B 에 등재된 물질은 스톡홀름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로는 생산·사용
· 수출입 등 취급을 금지·제한하며 부속서 C 에 등재된 물질은 배출원·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조치를 취함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가. 수은 : (Hg(0), CAS No. 7439-97-6)

나. 수은화합물 : 수은원소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화학성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다른 화합물로 분리되는 모든 물질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7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1. 취급금지 물질의 특정면제 국내적용 사항(법 제13조제1항제1호)

고유번호	부속서 등재정보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면제종료
2004-9	A,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생산	없음	-
			사용	•액체 원료가 담긴 변압기, 콘덴서 또는 리셉터클	2025.12.31.
2009-17	A	테트라브로모다이페닐 에터와 펜타브로모다이페닐 에터(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생산	없음	-
			사용	•동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 가능한 재활용 물질로 제조된 완제품(단,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및 처리하는 경우)	2030.12.31.
2009-18	A	헥사브로모다이페닐 에터와 헵타브로모다이페닐 에터(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생산	없음	-
			사용	•동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 가능한 재활용 물질로 제조된 완제품(단,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및 처리하는 경우)	2030.12.31.
2017-27	A	데카브로모다이페닐 에터 (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생산	•플라스틱 하우스 첨가제 및 전기 부품을 포함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난방기구, 다리미, 선풍기, 투입 히터에 사용하는 부품 첨가제(단, 부품 중량의 10% 이하 농도로 난연기준 준수)	2025.2.20.
			사용	•레거시 자동차(legacy vehicles)부품, 항공기('18.12 이전 승인 신청하여 '22.12 이전 승인) 부품 •플라스틱 하우스 첨가제 및 전기 부품을 포함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난방기구, 다리미, 선풍기, 투입 히터에 사용하는 부품 첨가제(단, 부품 중량의 10% 이하 농도로 난연기준 준수)	
2019-30	A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생산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유성 및 방수성 섬유	2026.6.2.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8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사용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유성 및 방수성 섬유 •반도체 제조(사진석판인쇄 또는 식각 공정) •필름의 감광 코팅제 •침습성 및 이식성 의료기기 •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에 기설치 된 화재진압 거품 •PTFE·PVDF(가스·수처리 막필터, 의료용 직물 막, 산업폐기물 열교환기 장비, VOCs·PM2.5 방지용 산업용 실란트) 제조 •산업용 전기 와이어·전력 케이블 생산용 FEP 제조 •오링(O-rings), 브이벨트(v-belts) 및 자동차 인테리어용 플라스틱 악세서리 생산용 불소고무 제조			

2. 취급제한물질의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고유번호	부속서 등재정보	화학물질	활동	허용용도 또는 특정면제	면제종료
2009-21	B	과불화옥테인설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테인설폰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생산	• 허용용도 : 해당 없음 • 특정면제 : 해당 없음	-
			사용	• 허용용도 : 해당 없음 • 특정면제 : 이동식, 고정식 시스템에 기설치 된 화재진압 거품	2026.6.2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9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나.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 1 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 하는 경우

수은첨가제품		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날짜* (단계적 철폐일)	특정면제	면제종료
배터리 전지(수은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전지 및 수은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를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수은함량이 2%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전지 및 수은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공기아연전지		2025년	없음	없음
스위치와 계전기(브릿지, 스위치 또는 계전기당 수은 함량 최대 20mg인 정전용량과 손실을 측정하는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RF) 스위치 및 감시와 제어 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를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브릿지, 스위치 또는 계전기당 수은 함량 최대 20mg인 정전용량과 손실을 측정하는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RF) 스위치 및 감시와 제어 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2025년	없음	없음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는 30와트(watts)이하의 일반 조명용 소형형광램프(CFLs)		2020년	없음	없음
30와트(watts) 초과와 일반 조명용 소형형광램프(CFLs)		2026년	없음	없음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30와트(watts) 이하의 일반 조명용 통합안정기가 있는 소형형광램프(CFL.i)		2025년	없음	없음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30와트(watts) 이하의 일반 조명용 비통합안정기가 있는 소형형광램프(CFL.ni)		2026년	없음	없음
일반 조명용 직선형광램프(LFLs)				
	가.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는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나.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mg을 초과하는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2020년	없음	없음
	다.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mg을 초과하지 않는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라. 40W 초과인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2026년	없음	없음
	마.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바. 60W 이상인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2027년	없음	없음
일반조명용 비직선형광램프(NFLs) (예시: U자형 및 원형)				
	가. 모든 와트 범위의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2027년	없음	없음
	나. 모든 와트 범위의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2026년	없음	없음

* 해당 연도의 말일을 의미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10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수은첨가제품				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날짜* (단계적 철폐일)	특정면제	면제종료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HPMV)				2020년	없음	없음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CCFL 및 EEFL)의 수은 가. 램프당 수은 함량이 3.5mg을 초과하는 짧은 길이(≤500mm) 나. 램프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는 중간 길이(500mm < 길이 ≤1500mm) 다. 램프당 수은 함량이 13mg을 초과하는 긴 길이(>1500mm)				2020년	없음	없음
현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길이의 전자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CCFL) 및 외부 전극 형광램프(EEFL)				2025년	없음	없음
미백 비누 및 크림을 포함한 화장품(수은함량 1ppm 이상), 단 수은이 보존제로 사용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보존제 사용이 불가한 눈주위화장품은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미백 비누 및 크림을 포함한 화장품, 단 수은이 보존제로 사용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보존제 사용이 불가한 눈주위화장품은 제외				2025년	없음	없음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2020년	없음	없음
다음의 비전자 계측기기 가) 기압계 나) 습도계 다) 압력계 라) 온도계/체온계 마) 혈압계 단, 적합한 무수은 대체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장비에 비전자 계측기기 또는 고정밀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전자 계측기기는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혈량계에 사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				2025년	없음	없음
용융압력 변환기, 용융압력 전송기 및 용융압력센서(대규모 장비에 설치되거나 수은 사용 제품 이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는 고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2025년	없음	없음
수은 진공 펌프				2025년	없음	없음
타이어 밸런서 및 휠 무게추				2025년	없음	없음
사진 필름 및 종이				2025년	없음	없음
위성 및 우주선용 추진제				2025년	없음	없음

* 해당 연도의 말일을 의미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9	제 정 일 자	2013.08.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4.10.02(2)	쪽 번 호	11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다.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단계적 철폐일*	특정면제	면제종료
염소-알칼리 생산	2025년	없음	없음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촉매로 사용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생산	2018년	없음	없음
수은 함유 촉매를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제조공정	2025년	없음	없음

* 해당 연도의 말일을 의미한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